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104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호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변론 종결2023. 4. 27.

판결 선고2023. 5. 18.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15,931,8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931,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2020. 7. 31. 50,000,000원, 2021. 6. 14.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9. 6. D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기업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D와 원고 사이의 기업신용카드거래로 D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20. 7. 31.자 대여계약에 관한 C의 보증한도액은 55,000,000원, 2021. 6. 14.자 대여계약에 관한 보증한도액은 110,000,000원,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관한 보증한도액은 11,000,000원이다.

다. 2022. 3. 30.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107,439,876원(= 2020. 7. 31.자 대여금 채무 25,855,048원 + 2021. 6. 14.자 대여금 채권 81,584,828원), 기업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원금은 7,016,793원, 각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은 1,475,292원이다.

라. D는 2022. 2.부터 각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D와 원고 사이의 각 여신거래에 편입된 여신거래약정서 제8조 제4항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고 규정한다.

마. C은 2022. 1. 26. 당시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1.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8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인 부산 강서구 F 전 425m²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권액에 해당하는 115,931,8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C은 2022. 1. 26.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C에게 약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 2) 피고는 C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D 및 연대보증인인 C에게 115,931,961원(= 107,439,876원 + 7,016,793원 + 1,475,29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다. 나아가 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는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을 제2호증의 4, 5호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의 2022. 6. 7.자

준비서면 1면 이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와 피고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을 제2호증은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C에 대한 채권액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채권액을 믿기 어렵다),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21. 1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등 피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 ③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C 또는 D에 대한 채권 상계, C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승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만 바로 변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④ D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이 염가이거나,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H 사이에 금전거래가 수시로 있었다는 점, H이 피고의 사내이사였다는 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E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8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로 상실한 책임재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 115,931,961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 395,061,300원(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085,061,3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던 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보다 더 적은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15,931,9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115,931,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동현

별지

1)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2022. 1. 27.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22. 1. 26.인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택한다.